

연구논문

한국 자연보호구역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정* · 최종관** ·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

(2011년 07월 05일 접수, 2011년 11월 06일 승인)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ive of Protected Areas in Korea

- Case study in Protected Areas of Australia -

Kim, Min-Jeong* · Choi, Jong-kwan** · Lee, Sang-Don*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artnership Department, National Park Service**

(Manuscript received 5 July 2011; accepted 6 November 2011)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comparing protected areas of Korea and Australia based on international conservation criteria by IUCN and analyzing what we need to improve for future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of Korea. The registration status of protected areas of Korea listed on IUCN were 11 places in the Ia, 17 in II, 7 in IV, 7 in V; in total 42 places were recorded. However, the lists were missing many important areas. In Korea, we have only 4 protected area categories out of 6 indicating ecological diversity and management in its protected area system are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9340 protected areas of Australia were listed on IUCN and evenly distributed in the total of six categories. Therefore, Korea should investigate measures for system establishment which ensures the diversity and indicative of our natural ecosystems and establish balanced system of protected areas including all IUCN categories I-VI through reevaluation of natural,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 needs.

Keywords : Protected area, IUCN, Category, South Korea, Australia

1. 서론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녹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단기적이고 무분별한 개발 중심적 토지이용은 귀중한 자연자산의 상실을 초래하여 생물서식공간의 축소 및 서식지 훼손과 자연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생물의 서식환경과 유전자 다양성 보존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박용하, 2008), 질 높은 자연생태계와 풍부한 생물 종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환경부, 2007).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초 천연기념물(Natural Monument) 보호를 위한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윤양수 외, 2000).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10만 개소 이상의 다양한 보호지역(Protected Areas)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대략 2천만 km²에 이른다(허학영 외, 2007). 이러한 보호지역은 관련법제와 관리목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1,388개 이상의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IUCN, 1994),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위원회(CNPPA, Commission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를 통하여 다양한 보호지역을 기술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보호지역 체계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자연보호구역의 국제

적인 범주화를 추진하여 왔다.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은 보호지역의 다양한 명칭으로 인한 용어 혼란 감소, 엄격한 보존에서 지속 가능한 이용까지의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보호지역의 유형 정리, 통합적 국가차원의 보호지역 시스템 구축, 국제적 이해 및 교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허학영 외, 2007).

우리나라는 이러한 IUCN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는 대규모 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2012년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총회는 지구환경문제 전반에 걸친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하다. 개최국으로의 선정은 국제사회로부터 '환경선진국'으로써의 위상을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자연환경정책 분야의 국제적 평가결과(2008년 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의 종다양성 및 서식지 평가)에서 149개 국가 중 126위로 평가되었음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지역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에 발맞추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의 일환으로써 핵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보호지역 지정·관리 근거규정 마련, 지질공원과 같은 새로운 공원제도 도입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보전 법령정비 및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WCC, 2010).

IUCN기준에 따라서 IUCN 산하의 WCPA(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와 WCMC(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er)가 공동 협력하여 유엔 보호지역 목록(UN Protected Areas)을 작성하여 공식 발표하고 있다. 개별 보호지역이 UN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IUCN의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되어야 하고 면적이 1,000ha 이상(해상 섬의 경우는 100ha 이상)이 되어야 한다(우형택, 2002).

현재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IUCN에 등재된 우리나라 국가지정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분류현황은 Ia에 11개소, II에 17개소, IV에 7개소, V에 7개소

로 총 42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IUCN 등재현황을 알아보고 더 많은 개소수가 IUCN에 등록되기 위해 국내 보호지역에서 검토, 개선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는데 있어 호주와 그 비교 국가로 정한다. 국토의 13%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호지역지정기준을 IUCN 분류기준에 기반을 두어 자국 내 대부분의 보호지역이 IUCN 카테고리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호주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현황을 비교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보호지역 지정·관리의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II. 연구 내용 및 범위

1. IUCN에 의한 자연보호구역 분류체계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자연보호구역 분류체계는 없으며, 국가별로 국가의 특성과 보호

대상 자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분류는 그 지역이 설립되는 법적 정의에 포함된 관리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각 지역의 관리의 효과성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IUCN에서는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 위원회(CNPPA)를 통하여 다양한 보호지역을 기술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보호지역 체계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자연보호구역의 국제적인 범주화를 추진하여 왔다(윤양수 외, 2000).

IUCN은 관리목적에 따라 I에서 VI까지 총 6개 유형으로 자연보호구역을 분류하고 있다(IUCN, 1994). 유형 I~V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연특성 및 생물학적 자원의 보전 또는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지역이며, 유형 VI은 범주체계를 창안하던 초기에는 보호지역의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많은 나라에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자원이용의 중요

Table 1.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by IUCN

유형	명칭	정의
Ia	학술적(엄정) 보호지역 (Strict Nature Reserve)	- 특이하거나 대표적인 생태학적, 지질학적, 물리적 특징이나 생물 종을 갖고 있는 육지 또는 해역으로 주로 과학적인 연구와 환경모니터링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
Ib	야생원시지역 (Wilderness Area)	- 야생원시지역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 영구적 또는 중요한 거주지가 없는 지역으로서 자연적인 특성과 영향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있지 않거나 약간만 훼손된 육지 또는 해역으로서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고 관리되는 지역
II	국립공원 (National Park)	- 생태계보호와 위락적 이용을 위해 보호·관리하는 지역 - 1)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생태학적 특성을 보호, 2)지역의 지정목적에 반하는 자원 채취나 토지이용을 배제, 3)환경 및 문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정신적, 학술적, 교육적, 위락적인 요소와 탐방의 기회를 제공
III	천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 특별한 자연특징물의 보전을 위해 보호·관리되는 지역 - 희귀성, 대표적/심미적 질 또는 문화적 중요성에서 뛰어난 가치가 있는 한 개 이상의 특별한 자연적·문화적 특징지역
IV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 관리를 통한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 - 특별한 생물 종의 보호나 서식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
V	자연(해역)경관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 /Seascape)	- 주로 자연경관이나 해역경관의 보전과 위락적 이용을 위하여 보호·관리되는 지역 - 장기간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가 중요한 심미적, 생태학적 그리고/또는 문화적 가치와 높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갖는 뚜렷한 특성을 갖게 만든 육지 또는 해역지역으로, 전형적인 상호관계의 보장은 그러한 지역의 관리, 진화, 그리고 보호에 필수적
VI	자원관리보호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보호·관리되는 지역 - 장기적인 생물학적 다양성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관리되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으로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자연생산물의 지속적 이용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성이 부각되면서 추가되었다(윤양수 외, 2000). 카테고리 I에서 VI으로 갈수록 인간의 간섭과 이용이 높아진다(Table 1).

IUCN(2006)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1)보호지역의 면적은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가질 것; 2)적어도 지정면적의 3/4 이상은 주목적으로 관리될 것; 3)관리의 주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만 관리목표에 부응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4)보호지역의 관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지역과의 지역계획과의 연계 하에 관리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환경부, 2007).

IUCN이 채택하고 있는 보호지역 범주 체계는 세계 각국에서 1,388개 이상의 각기 다른 용어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국제적 공통 기준을 제공하며, 국제간 비교의 기본이 된다.

2.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

2.1 한국의 보호지역

우리나라에 지정된 보호지역을 지정목적과 지정 기준을 근거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3 종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허학영 외, 2007).

첫째,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궁극적 의미의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둘째,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 서비스, 오염방지(복원)에 중점을 둔 상수원보호구역, 보안림, 지하수보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산림정화보호구역, 온천원보호지구 등

셋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용도구분의 성격이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다.

위의 3가지 유형 중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문화자원, 경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법적 또는 기타 효율적인 수단으로 지정·관

Table 2. Designation status and organization of protected areas of Korea

구분	개소수	면적(km ²)	관계법령	지정(관리)기관
국립공원	20	6,580	자연공원법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도립공원	23	784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단체
군립공원	33	441	자연공원법	지방자치단체
생태·경관보전지역	30	294.55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시도지사
습지보호지역	18	251	습지보전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특정도서	153	9,985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	환경부
환경보전해역	4	1,882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수산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544	1,392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시도지사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1	26.20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시도지사
천연기념물	149	1,229.9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	10	390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명승	15	83.8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백두대간보호지역	1	2,63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산림청(환경부협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32	338.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처장
보안림	-	3,414.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산림청장,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처장
합계	1,233	17,119		

리되는 지역'이라는 정의(허학영 외, 2007)에 부합하는 보호지역은 첫 번째 유형으로 그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위의 보호지역의 범주 외에도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천연보호림, 그리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조수보호구역 및 금렵구역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으나 실제로는 타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보호지역을 포함하여 국토 이용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여러 법률에 의해 다양한 범주의 보호지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보호지역 상호간의 중복 지정이 많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여러 행정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보다 단순한 지정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우형택, 2002).

2.2. IUCN 등재현황

우리나라의 자연보호구역 중 IUCN의 카테고리 I~VI에 포함된 곳은 총 42개소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3).

2.3. 우리나라 등재현황 연도별 비교

국내 자연보호구역의 UN List 등재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았다. 1990년과 1997년, 2010년에 각각 17, 26, 42개소의 국내 보호지역이 UN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국내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체 보호지역의 수와 비교하면 그 변화가 크지 않으나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지정지역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아직 자연보호구역 체계의 범주 별 다양성과 대표성이 미흡하나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1990년 카테고리V의 17개 지역에 1997년 카테고리IV가 추가되어 총 2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6개의 카테고리 중 IV, V에만 보호지역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높은 자연성을 지니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간의 간섭정도가 높은 보호지역으로 구성되

Table 3. Protected areas of Korea recorded in 2010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IUCN Category	Areas	Number of protected areas
Ia	학술적(엄정)보호지역	11
Ib	야생원시지역	-
II	국립공원	17
III	천연기념물	-
IV	종/서식지관리지역	7
V	자연(해역)경관보호지역	7
VI	자원관리보호지역	-
Total		42

어 있음을 나타낸다(우형택, 2002). 2010년에는 총 42개로 많은 지역이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모든 범주의 보호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Table 4). 자연성이 높은 지역부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지역까지 각 범주별 대표적 보호지역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체계를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90년에는 17개 지역이 모두 카테고리 V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국립공원으로, 당시 지정되었던 국립공원 모두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국립공원은 카테고리II로 분류). 1997년 역시 국내의 자연공원법에 의해 설립된 20개의 국립공원 전부가 국제기준에 미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1개의 국립공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체제를 정비하여 2010년 현재 총 17개 국립공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중 5개의 국립공원(내장산, 한라산, 변산반도, 치악산, 가야산)은 최근 2010년 11월 1일 자로 생태적 보호 가치가 높은 카테고리II(국립공원)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이들 5개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체계상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낮은 카테고리V(자연(해역)경관보호지역)에 속했다. 또한 원시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보호관리가 이루어지는 Category Ia의 수가 증가하여 자연보호지역의 내실을 다진 경향을 볼 수 있다.

국제 기준에 적합한 자연보호구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카테고리III과 VI에는 한 개소도

Table 4. Summary of protected areas recorded based on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in Korea

Year	Ia/Ib	II	III	IV	V	VI	Total
1990	-	-	-	-	17	-	17
1997	-	-	-	6	20	-	26
2010	11	17	-	7	7	-	42

Table 5. Protected areas of Australia recorded in 2010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IUCN Category	Number of protected areas	Total area (ha)	Proportion of total protected areas(%)	Australia lands (%)	Average size (ha)
Ia	2491	22,008,139	22.35	2.86	8,835
Ib	66	4,159,455	4.22	0.54	63,022
II	1000	39,867,825	40.48	5.19	39,828
III	2333	1,648,758	1.67	0.21	707
IV	2190	4,220,021	4.28	0.55	1,927
V	218	1,017,104	1.03	0.13	4,666
VI	1042	25,565,814	25.96	3.33	24,535
Total	9,340	98,487,116	100.00	12.81	10,544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카테고리 III, 즉 천연보호구역 설립이 시급하다. 더불어 자연의 지속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자원이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관리를 추구하는 카테고리 VI 자원관리보호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호주의 보호지역 지정

3.1. 호주의 보호지역

호주에는 9개의 보호지역 시스템이 존재(6개주, 2개 자치 Territory, 호주연방정부)하며, 이를 총괄해서 생물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적 보존 시스템(NRS, National Reserve System)이라고 하며, 또한 해양보호지역은 관할지역에 따라 8개의 분리된 해양보호지역시스템이 존재한다. 엄격한 자연보존지역에서 사냥제한구역(game reserves)까지 50개가 넘는 보호지역 유형이 있다(허학영 외, 2007). 보호지역은 종 다양성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보호지역의 복합적 이용을 허용하며, 보호지역의 면적은 호주 토지의 약 13% 정도이다. 여기에 NRS는 호주 전체 지역의 원시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허학영 외, 2007).

3.2. IUCN 등재현황

호주는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EPBCA,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허학영 외, 2007). 대략 50개가 넘는 다양한 보호지역의 관리 목적은 IUCN의 정의를 따르며 개념적으로 IUCN 보호지역 범주 중 하나를 취한다. 개별지역의 명칭이 IUCN카테고리 명칭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목적과 가치에 따라 복합적 분류(Multiple category)를 적용하는 등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2010년 현재 호주의 보호지역 IUCN 등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Table 5).

호주는 9300개가 넘는 지역, 전국토의 약 13%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호지역의 40%가 IUCN 카테고리 II인 국립공원(National Park)로 구분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보호지역은 카테고리 Ib인 야생원시지역(Wilderness)으로 63,000 ha 이상의 평균크기를 가진다. 가장 작은 규모의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III인 천연보호구역(Natural Monuments)이며 그 평균 크기는 707 ha정도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IUCN기준에 의한 양국 비교 및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보호구역 지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국내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명칭의 많은 자연보호구역이 설립되어 있으나, IUCN의 국제 기준을 적용하여 지정되고 관리되는 보호지역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적용한 UN List의 결과 전체 1233개의 보호지역 중 약 3.4%인 42개 지역만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개 지역은 카테고리 Ia로 분류되어 있고 II에 17개 지역, IV에 7개 지역, 나머지 7개 지역은 카테고리 V로 분류되어 6개의 범주 중 4개의 범주만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보호지역이 국제적인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반면 호주는 총 9340개 지역이 UN List에 등재되어 있으며 6개 범주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WCPA, 2000).

한 국가의 자연보호구역 설립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IUCN이 제시한 카테고리 I에서부터 V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의 자연보호구역을 포함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카테고리 III과 VI에 포함되는 지역이 전무한 반면 호주는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은 보호지역 체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화 되어 있고, 호주와 비교하였을 때 보호지역 체계의 범주 별 다양성과 대표성이 미흡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양국의 자연적 조건과 상태가 무척 상이하고 UN List 중 육지의 경우 1,000ha 이상의 자연보호지역만 포함시키는 기준이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지정된 1,000ha 이하의 소면적의 자연보호지역은 제외(해상 섬의 경우는 100ha 이하)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70배 이상의 국토면적이 차이를 갖는 한국과 호주를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발과 이용보다 엄격한 보호와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보호구역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날 보호지역의 중요성은 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나고야의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종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Locke and Dearden, 2005). 우리 나라 보호지역도 국제규격에 맞추어 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한 국제적 달성 수준과 성과도 달성할 수 있음을 본 논문은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최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MEE,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를 통해 한국의 보호지역을 분석한 결과 호주·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비전 및 계획 수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지역 시스템의 경우 보호지역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보호지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계획·관리된다기보다 관할기관 등에 따라 분산돼 많은 지역이 지리적·생태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지역과 관련된 법규가 서로 상충하거나 중복돼 있어 자원낭비와 혼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목록에 오른 개별보호지역 중 81%, 특별보호구역의 95%가 자연자원 가치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경미한 수준의 훼손만을 보이는 등 아직까지 자연자원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자연자원 관리보다 방문객 서비스에 치중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또한 대부분 보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보호지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의 관리 개선을 위해 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접근방법 전환, 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체계수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카테고리 I-III은 다양한 자연보호구역의 전통적 설립을 포함하고, 카테고리 IV는 자연생태계의 회복과 복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립될 수 있으며, 카테고리

V, VI은 생물적 다양성의 유지만이 주목적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의 보전, 환경관리,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의 제공 등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데 적절한 대안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여 가능한 한 카테고리 I-VI을 모두 포함하는 균형 있는 보호지역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 사

본 논문은 KRF(2009-1449-1-6)와 LTER(16000-16001-2) 및 KEITI(403-112-405)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 박용하. 2008.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환경부. 109p
- 우형택. 2002. 국제기준에 근거한 남북한 자연보호 지역의 실상 비교. 한국환경과학회지. 11: 1-14
- 윤양수, 박용하, 최재용. 2000. 자연친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체계개선 연구. 국토연구원
- 환경부. 2007.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 연구
- 환경부. 2009. 환경통계연감 제22호
- 허학영, 김현, 이영주, 김성일. 2007.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연구. 6(13): 71-96
- IUCN. 1990. 1990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 IUCN. 1994.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 IUCN. 1998. 1997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 Locke, H. and P. Dearden. 2005. Rethinking protected area categories and the new paradigm. Environmental Conservation 32:1-10
- WCPA Australia and New Zealand Region. 2000. Application of IUCN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http://www.iucn.org>
- <http://www.wdpa.org>
- <http://www.wcc2012.or.kr>
- <http://www.protectedplanet.net>
- <http://www.environment.gov.au/parks/nrs/science/capad.html>
- <http://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220166593138496&DCD=A03101>
- WCC. 2010. <http://www.wcc2012.or.kr>